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12.

제안자 :

수정이유

- 설립 출연금이 전액 준비로 출연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먼저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는 등 세부적인 법인설립 절차를 이행해야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만 있고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음.
- 따라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이 본조례에 규정되도록 하고, 법인의 정관으로 위임해야할 사항, 임원의 구성방향, 정관변경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고자하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운영지원조례에서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변경함.
- 나. 법인격과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다. 연구센터가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 라. 임원구성과 인원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5조)
- 마. 연구센터에서 수행해야할 사업내용을 조례에서 정함.(안 제6조)
- 바. 연구센터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7조)
- 사.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8조(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과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 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 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제4조(재산출연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민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제7조(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p>제8조(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연구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